

대구지방법원 2020. 1. 22 선고 2019나406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권재현

피고, 피항소인 B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정대

변론 종결 2019. 12. 11.

판결 선고 2020. 1. 22.

제 1 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5. 15. 선고 2018가소55696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4,16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개인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소유자이고, 피고는 D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6. 29. 20:00경 차량 정체 중이던 대구 북구 E 편도5차로 도로를 팔달교 방향에서 침산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위 도로의 편도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앞산 지하차도로 진입하려 하던 중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 측면에서 원고 차량을 앞질러 위 지하차도를 진입하려던 피고 차량의 운전석 쪽 화물칸뒷 범퍼 부분과 원고 차량의 조수석 쪽 힙다 부분이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한다). 한편 이 사건 사고 현장에 경찰관과 원고 차량의 보험회사 직원이 출동하여 당시 상황을 확인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8. 10. 16. 원고 차량의 수리를 수리업체에 의뢰하여 2018. 10.18. 수리를 마쳤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 차량의 과실을 70%로 인정하여 2018. 10. 31. 원고 차량수리비 중 70%인 670,000원을 원고 및 수리업체에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8. 10. 31. 원고에게 공제계약에 따라 원고 차량의 수리기간인 3일(2018. 10. 16.부터 같은 달 18.) 동안 운휴로 인한 일일수입 중 70%인 93,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과 원고 차량 보험회사 직원을 직무유기로 고소하였으나, 2018. 10. 11. 담당 검사는 각 각하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6호증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100% 과실로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비율을 결정해 주지 않아 74일 동안 운행을 하지 못했고, 이 사건 사고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 74일에 해당하는 운휴 일실수입 합계 2,960,000원에서 피고로부터 수령한 운휴 일실수입 93,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867,000원, 2 원고차량수리비 중 원고의 과실이 30%라고 하여 원고가 부담한 300,000원, 3 위자료 1,000,000원의 총 합계 4,16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원고의 1, 2 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 차량에는 거의 충격흔이 없고, 원고 차량의 충격부위인 휠다에도 다소간의 굵힌 흔적만이 확인되는데, 당시 차량 흐름, 위 충격 부위와 충격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차선을 변경하여 지하차도에 진입하려던 원고 차량 및 피고 차량의 운전자 모두 전방주시의무 내지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이고,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30%, 70%로 봄이 상당하다. 달리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의 100%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차량의 100%과실을 전제로 재산적 손해를 구하는 원고의 1, 2 청구는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3 청구에 관하여 본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1996. 11. 25. 선고 96다31574 판결 등),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았고, 달리 그 외에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3 청구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정인섭, 판사 최미복, 판사 이준규